

늘어난 어항건설 예산과 함께

어항인 능력도 배양토록

건설업계가 치룬 값비싼 경험을 거울로

참으로 돌이켜 보기도, 기약하기조차도 싫은 94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 우리 리는 이론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사고란 사고는 모두 체험하였다.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이 모든 사고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사실이다.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

참으로 돌이켜 보기도, 기약하기조차도 싫은 94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 우리 리는 이론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사고란 사고는 모두 체험하였다.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이 모든 사고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사실이다.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

당국 건설시공 위한 장인정신 발휘할때

설계·부분감리등 민간에 위임 전문화 도모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사리라.

이와 반해 올해의 어항공사 는 별 무리없이 순탄하게 잘 진행된 듯하다. 몇차례 태풍 이 지나가기도 했지만 큰 피해가 없었던 것도 참이로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올해의 수많은 대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것이 그렇고, 국외적으로는 세계 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문자 그대로 전 지구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모하는 상황이 성큼 우리 문앞에 다가서 있는 것이 그렇다.

정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WTO발효 후 향후 5년간 입계 될 우리나라 중수축산업의 피해는 각 산업별로는 적게는 50만 자치 출수와 부실의 함정

다. 그렇지만 우리 어항인이 이 기회에 명심해야 할 사항은 어항예산의 증액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이다. 그동안 협회가 각계각층에 어항에 산 증액을 호소, 마침내 이것이 관철되긴 했지만 어항인 스스로 증액된 어항예산 효과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함께 배양하지 않으면 자칫 출수와 부실의 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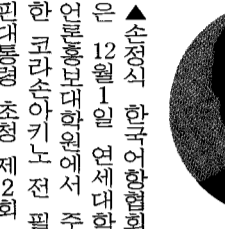
다. 그렇지만 우리 어항인이 이 기회에 명심해야 할 사항은 어항예산의 증액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이다. 그동안 협회가 각계각층에 어항에 산 증액을 호소, 마침내 이것이 관철되긴 했지만 어항인 스스로 증액된 어항예산 효과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함께 배양하지 않으면 자칫 출수와 부실의 함정



▲박광호 수산청장(12월 31일 수산청 대회의실에서 94년도 중부수 및 수산진흥사업자 포상식을 거행.)



李方鎬 수협중앙회장



河星煥 한국어선협회장



孫井權 한국어항협회장

▲이병호 수협중앙회장이 12월 6일 새오민간협회를 시

▲하성환 한국어선협회장이 12월 14일 새오민간협회를 시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자로 해주용대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상우 남해도건설사회

▲김영석씨(전 KBS기

▲박기철씨(한국어선협

▲김기홍씨(수산청과

▲김영석씨(전 KBS기

▲김영석씨(전 KBS기

▲한국어항

업체 종합화·전문화 유도해야

시장개방 대응 체질강화 대책으로

관련제도 개선 시급

건설제도개편방향 심포지엄

향후 건설시장개방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비키 위해 정부는 시장진출입제도, 건설공사 방지대책 등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프로젝트관리기술회가 마련한 정기심포지엄에서 국제화를 위한 건설제도의 개편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업체의 체질강화를 위해서 건설관련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종합화와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은 각 항목별로 요약 소개한다.

면허 허가조건 최소화 D/B법 심사제도 도입

비키위해서는 우선 면허제도의 허가조건을 장기적으로 최소화(면허허가인자↓) 지정해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국내 시장구조 조정을 위해 업계를 종합평가하는 종합다차제를 보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키 위해서는 공사별, 발주기관별 사전연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손실을 보전키 위한 설계보증보험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의 집약은 공적으로 발주자입장에서 필요한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P/Q제도는 공종별 또는 발주기관별 등급심사제를 보완하고 해당공사 관련 기술력 중심의 심사항목 가중치가 중대되어야 한다.

조사·설계·공사관리제도 향상조사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도입해 원실제에 가장조건인 타당성을 검증·기술제안서심사 등에 반영해야 하며 설계상에 부실로 인해 나타난 제도권 외 흡수해야 한다.

하도급관리제도·하도급을 육성키 위해서는 우선 재하도급이하의 중증하도급기능을 양성화시켜 제도권에 흡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생산성관리방안을 강구해 현장품질제고를 꾀하길 한편 하도급중사 일용직으로 자의 신상을 D/B화해 공극적으로 상충근거자에 준하는 자료관리를 실시·기술력향상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건설관련법령 및 규정 정비 건설관련법체계를 기본법과 특별법으로 분리통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술도서는 건설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국내 제기준을 통일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시방서를 작성은 영토를 조정해야 한다.

분쟁조정 건설업의 분쟁조정 담당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다단계 분쟁조정기능의 도입이 요망된다.

이와 함께 계약상의 분쟁 중 기술적 사항을 검토 조정키 위한 건설품질점·인정기관의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연구개발정책 민간부분의 연구개발부위기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유인·활성화시키는데 정책이 미흡하다.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력평가 중심의 입찰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하며 건설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연구개발비로 징수·연구개발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에 따르면 구조물형상의 단순화로 콘크리트체적 10%, 철근량 5%가 각각 증가하는 한편 유닛철근 사용으로 노후비가 50%나 줄고 대형형질의 도입으로 또다시 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이바지에 구조적·설계도면작성, 적산까지 일련의 작업을 연동시켜 마치는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를 추진하여 여촌지역 활성화를 21세기초에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50개 지역을 지정하여 특히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교류거점정비는 올해 10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책정했다.

토목공사 표준 설계 보완키로

해외어항

노동량 줄이는데 초점

일본 건설업의 토목공사 표준설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노동량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의 현상작업의 생략화를 목적으로 신규

겨울철 재해 예방

어민피해 최소화 수상청 대책 시달

수상청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를 겨울철 재해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청이 파악한 지난 5년동안의 겨울철 수산피해는 전체 수산피해의 43%를 차지한 4백37건이었다.

수상청이 특이 기간 중 양산품종인 김·미역·돌돔을 수확채취하는 기간으로 폭풍·폭설·유빙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 재해예방에 주력키로 하고 겨울철 재해대비에 예방대책을 수립, 전국 수산청이 이 시달에서

어선의 경우 기상정보 및 어선의 인출현황 등 정보를 강화하고 영동부후로 상항선을 운영하길 한편 매시간 기상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수상청이 이와 함께 중양산시설에 대해 종류별 시기별로 지도관리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어장별

구역 단위로 어민피해를 방지, 유빙해 무면허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피해발생 예방에 대한 면담·정진 등 와 신규면허를 금지토록 하는 한편 시도 공무원의 현지지도도를 더욱 강화토록 했다.

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사용자에는 다소 늘어나거나 노동량의 적어져 결과적으로 건설공사의 원가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의 시험시공 사례

지역특성활성화

日 수산청 50개 지구 지정

일본 수산청이 최근 신마리노베이션(바다의 기술개발)구상인 그후 새로운 정책변화의 따라 올해부터 새로이 신마리노베이션·시공·설계·부분·자문감리 등 다양한 형태의 건설공사 시행표준절차·건설공사 관리표준절차 등을 제정·인정수준 이상을 향유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건설업의 시험시공 사례

最新技術개발로 漁港漁村發展에 寄與하겠습니다

(株) 世一綜合技術公社

SE IL ENGINEERING CO., LTD.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1洞 65-106號 中央빌딩 TEL : 831-4411~6 FAX : 831-4417

經營陣 및 技術者

- 會長 : 煥旭 李
- 社長 : 宰龍 李
- 副社長 : 安玉 李
- 理事 : 錫廷 姜
- 理事 : 英一 鄭
- 理事 : 求在 徐
- 理事 : 錫馨 姜
- 理事 : 元重 徐
- 理事 : 尹
- 技術理事 : 錫馨 姜

漁港計劃樹立の要領

[63]

野積場



어구를 가지할 공간으로서는 당 어항의 등록어선 척수 B를 180척, 어선 1척당 사용어구 통수 N을 2(자당), 어구의 점유면적 V_p 를 10㎡로 하면 $A_2 = B \times N \times V_p = 3,600\text{㎡}$

③ 분류용 자재를 놓는 장소로서는 어상자 1개당 면적 : $a=0.22\text{㎡}$
 성어기 1일당 어획량 : $x=50\text{톤}$
 1상자당 생산중량 : $k=8\text{kg}$
 어상자를 쌓는 단수 : $n=15$
 어상자의 준비일수 : $D=6\text{일로 하면}$

$$y = \frac{X}{K} = 6,250$$

$$A_3 = \frac{a \times y}{n} \times D = 550$$

④ 양식용 자재의 조립에서 가치공간으로서의 연간생산목표 : $P=420\text{톤}$
 시설 1대당 연간생산량 : $X=3\text{톤}$
 시설의 고유계수 : $K=2.6$
 시설 1대의 면적 : $G=32\text{㎡}$
 시설 1대의 조립일수 : $E=0.5\text{일}$
 연간조립일수 : $F=70\text{일로 하면}$

$$J = \frac{P}{X} = 140$$

$$A_4 = K \times G \times \frac{E \times J}{F} = 83$$

⑤ 어구를 놓는 공간으로서는 당 어항에 있어서 어구는 조합의 어구창고에 수납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공간은

불필요하다.
 ①~⑤에서 구한 목적별 소요면적을 누계하여 최대치를 야적장 소요면적으로 한다. 다만, 겸용할 수 있는 것은 겸용을 고려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최소소요량은 12~2월의 4,650㎡이다. 3~11월에 필요한 ④는 배치상에서 ②의 용지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야적장 소요면적은 $4,650+83=4,733\text{㎡}$ 로 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配置
①	500	500										500	荷捌所近接의 第1線用地
②	3,600	3,600	3,600								3,600	3,600	休憩岸壁의 背後
③	550	550	550								550	550	荷捌岸後의 第2線用地
④			83	83	83	83	83	83	83	83	83	83	休憩所岩壁의 背後
⑤													
計	4,650	4,650	4,233	83	83	83	83	83	83	83	4,233	4,650	

우리나라에 담배가 처음 소개된 것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이다.
 현재 담배인구는 전체계적인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점차 더늘어가고 있다. 담배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인체에 대한 피해로서 담배연기속에 있는 니코틴, 4천여종의 불리 물질 및 화학물질의 흡입과 관의 직접적인 흡연을 주고 또한 폐에서 흡수되어 인체를 돌면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의 안을 포함한 각종장기를 망친다.
 또한 담배장염은 지혈되는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조기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질병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 그리고 국가적인 인력 손실을 각중화제로 인한

흡연과 건강

담배속 타르는 22가지의 발암물질 생성



건강·하·계·삼·시·다

손실이 있다. 가족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담배 피우지 않는 가족도 담배로 인한 각종질병에 이환될 위험도가 더 높으며 특히 어린이는 상기도염, 천식, 그리고 폐렴에 걸릴 확률이 2배 또는 그 이상 높아진다.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면 태아는 기형, 발육부족, 사산, 조산들의 위험이 높아진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호흡기에 대한 영향으로 담배를 한개피만 피워도 폐기능장애에 영향을 미친다. 10% 줄어든다.
 담배연기를 마시면 기관지의 점막을 자극하고 심부전증 등을 방해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침, 가래가 많아 천식에 더 자주 걸린다.
 담배속에 있는 타르는 22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면 그속에 있는 발암물질이 일차적으로 구강, 인후, 기관지 그리고 폐에 암을 일으키게 되고 발암물질의 일부는 혈액속에 흡수되어 온몸으로 퍼져 각종장기의 암을 일으킨다. 위, 자궁, 신장, 전립선의 암을 일으킨다.
 순환기에 대한 영향을 보면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로 인한 저산소증의 부족으로 장염, 소화관내부의 손상을 일으켜 지방질의 혈관내벽 침착에 도움을 주며 심장의 혈관을 좁아지게 하여 저산소증의 의한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되면 치명률이 대단히

높다.
 하루에 담배를 한갑 정도 피우는 사람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1.8배이며 두갑이 상 피우면 2.5배가량 높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다 병이 날지 않을 때 끊으면 즉시 담배로 인한 피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담배의 해는 담배를 끊어도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된다. 담배를 오래피워 폐의 폐포조직에 손상이 왔으면 그것은 영위회복되지 않는다. 담배가 구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담배피우는 사람의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구강암의 발생률이 13배가 높

의료보험제도

요양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연간 180일 이내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 지역피보험자
 - 당해지역에 거주하게 된 날
 - 직장 피보험자 또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가 그 대상자에게서 제외된 날에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나. 자격 상실

- 1) 직장피보험자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때
 -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게 된 자로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 2) 지역피보험자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한 때
 - 조합관할 지역에서 퇴거한 때
 - 직장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

양자가 된 때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 된 때
-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때
-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게 된 자로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보험금료

- 가. 보험금의 종류
- 요양급여
 -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급여하는 것으로서 급여의 내용은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조합이 인정하는 간호 및 이송 등이 있다.

○ 요양비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요양을 받았을 경

우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분만급여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게 될 때 행하는 급여를 말한다.
- 분만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때에는 분만급여에 상당하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장제비
-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제를 행한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지급액은 조합정관으로 정한다.

나. 요양급여기간

피보험자(피부양자 포함)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인당 연간 180일 이내로 하되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요양급여 기간이 연간 180일에 달하더라도 보험자(조합)가 부담하는 요양급여 비용이 연간 55만원이 될 때까지 요양급여 기간은 연장된다.

다. 진료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와 분만급여를 받은 때에는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 외래
 - 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과 진찰료를 제외한 진료비 총액의 55%
 - 병원 : 진찰료 총액과 진찰료를 제외한 진료비 총액의 40%
 - 의원 : 진찰료를 포함한 진료비 총액의 30%

단,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제 : 방문당 1,700원(치과는 3,200원) * 단, 의원급이하 요양기관과 군지역소재 종합병원, 병원에 대하여는 진료비 총액이 10,000원 이하(치과는 1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부담 정액제로 하고 있음

○ 입원 : 진료비 총액의 20%

생활법률

생활법률

관리체계

우리나라 의료보험 관리체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소득과약이 용이하고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근로자와 소득과약이 어렵고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근로자(농·어민, 도시자영업자)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임금근로자는 생활상태가 유사한 집단별로 구분하여 사업장근로자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으로 구분 적용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이를 지역별(시·군·구)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적용대상자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자는 피보험자 자신과 피보험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적용대상자는 ①직장피보험자(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②지역피보험자(지역주민) ③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

가. 자격취득

- 1) 직장피보험자
- 직장피보험자는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